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28호서식]

# 검사공무원증표

1. 소속:
2. 직위:
3. 성명:
4. 유효기간:
   년 월 일
   ~ 년 월 일

3×4㎝
(3개월 이내의
촬영사진)

위 사람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61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,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영업소 또는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시설·장부·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**시·도지사**
**특별자치시시장, 특별자치도지사** 인
**시장·군수·구청장**

80㎜×100㎜[백상지(150g/㎡)]